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서

2023년 4월 18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4월 7일

나. 발 의 자: 고찬양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4. 18.)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고찬양 의원)

□ 제안이유

강서문화센터 명칭 변경 및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 종료에 따른 조례 내 문화시설 범위를 수정하고 관람료 감면 규정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내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수정(안 제3조)

- 강서문화센터의 강서아트리움 명칭 변경,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삭제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감면 규정 삭제(안 제18조)
- 다. 구청장 또는 승인을 받은 공연장 사용자의 관람료 징수 신설(안 제18조)
- 라. 관람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마. 관람료의 할인 관련 단서 조항 신설(안 제19조)
- 바. 기타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별표 서식 정비(별표 $1 \sim$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나. 협조부서: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2023. 4. 12. ~ 2023. 4. 17.)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관내 문화시설의 명칭 변경 및 운영 종료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조례 내 문화시설의 범위를 수정하고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는 시설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문화시설 범위를 수정함
 - 강서문화센터의 강서아트리움) 명칭 변경,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2) 삭제

1) 강서아트리움 현황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95(화곡1동)

○ 규 모: 지하2층/지상5층(연면적 4,228.86m², 대지면적 1,246.2m²)

구분	세부시설 설치(안)	면적(m²)
 5층	사무실, 문화강의실, 공용면적	445.79
4층	다목적실, 무용연습실, 음악연습실	499.16
3층	공연장	415.23
2층	공연장	597.86
1층	로비, 갤러기, 수유실, 안내실	496.90
지하1층	지하주차장, 방재실, 미화원휴게실	915.34
지하2층	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858.08



2)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9다길 80(염창동)

○ 폐지일자: 2023. 3. 9.(목)

○ 사 유: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운영 종료

[※] 강서아트리움 개관: 2023, 5, 3,(수) 예정

- 안 제18조 ③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결제에 관한 <u>감면 적용 유효기간의 종료③</u>로 인하여 해당 관람료 경감 규정을 삭제하였고, 구청장이 직접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8조 ④항은** 공연장 사용자는 관람료 감면 몇 관람권 발행에 관해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8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4³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는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반환 규정을 마련함
- 관람료 할인 관련 단서 조항 신설 및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식 현행화(별표 1 ~ 별표 6) 등 제반 사항 정비

³⁾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시행) 공연 관람료 환급

가.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된 경우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나. 관객의 환급요구가 있는 경우

⁻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 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기존 강서문화센터의 이전 및 강서아트리움으로 명칭 변경과 건축물 노후화로 용도 폐지된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람객으로부터 구청장 등의 관람료 징수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관람료 감면 규정 삭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 등 현재 시설 운영 상황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붙임

관계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 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 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